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64

발의연월일: 2022. 8. 23.

발 의 자:양금희·김도읍·김상훈

김선교 • 노용호 • 윤두현

유상현 • 이만희 • 정찬민

조명희 · 한무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 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재 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 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여전히 임차료의 부담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 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①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u>2023년 12월 31일</u>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